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상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616

발의연월일: 2024. 9. 4.

발 의 자:이상휘・박덕흠・박성민

구자근 • 백종헌 • 최은석

박성훈 • 권영세 • 서천호

임이자 • 배준영 • 강명구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·감정인·참고인으로부터 증언·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은 청문회의 개회 요건, 절차 및 공개 여부만을 규정할 뿐, 증인·감정인·참고인으로부터 증언·진술을 청취할 수 있는 시간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. 그 결과 지나친 증언·진술 요구로 증인·감정인·참고인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청문회가 목적을 달성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, 원칙적으로 청문회를 청문회 개회일 밤 12시 이전에 종료하도록함으로써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증인·감정인·참고인 보호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65조).

법률 제 호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이 경우 청문회는 청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.
- ⑤ 위원회는 청문회 개회일 밤 12시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. 다만,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5조(청문회) ① 위원회(소위원	제65조(청문회) ①
회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	
같다)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	
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	
한 경우 증인·감정인·참고인	
으로부터 증언・진술을 청취하	
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	
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	
있다. <u><후단 신설></u>	<u>이 경우 청문회는 청문회의</u>
	목적을 달성하는 한도 내에서
	<u>이루어져야 한다.</u>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⑤ 위원회는 청문회 개회일 밤
	12시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한
	<u>다. 다만, 위원장이 간사와 합</u>
	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
	<u>하다.</u>
<u>⑤</u> ~ <u>⑧</u> (생 략)	<u>⑥</u> ~ <u>⑨</u> (현행 제5항부터 제8
	항까지와 같음)